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9.6.12(수) 10:00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담 당 자	송용민 사무관(02-2100-2953) 김영대 전문관(02-2100-2730)
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	현지은 사무관(02-2100-2962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	이지현 사무관(02-2100-2993) 이지호 사무관(02-2100-2983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이명규 팀 장(02-3145-8030)

제 목 :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

-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금리인하 요구 활성화 관련 현장방문 -

◆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(2019.6.12)부터 시행됨

- 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,
- 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,
- 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

◆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제도 안내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

I 금리인하요구권 시행

1.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경과

-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음
 - 그러나,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음
- 이에 2018.12월, “금리인하요구권”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, 보험업법, 상호저축은행법,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
 -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오늘(2019.6.12)부터 시행

2.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내용

□ 소비자의 “금리인하요구권”을 법적으로 보장

-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(은행법 §30-2① 등)
- 현재까지 “여신거래기본약관”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

□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

-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(은행법 §30-2② 등)
-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·직원에게 대해 과태료 부과
 - *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고의·과실,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 가능

□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명확화 (시행령 및 감독규정)

- **(요구 요건)** 취업, 승진, 재산증가(이상 개인), 재무상태 개선(기업), 신용평가 등급 상승(개인·기업 공통)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
- **(고려 사항)** ①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, ②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

□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 (시행령 및 감독규정)

-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, 서면, 문자메세지, 이메일, 팩스 등을 통해 안내
- *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,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·관리

1. 행사 개요

- 2019.6.12(목),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,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

※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현장방문 개요

▣ 일시·장소 : 2019.6.12.(수) 10:00,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

▣ 주요 참석자

-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금융산업국장, 금융감독원 부원장
- 은행연합회, 생보협회, 손보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여신금융협회 임원
- 모범사례 발표 금융회사 임원 (카카오뱅크, 웰컴저축은행, 삼성화재)

▣ 행사 내용

- 제도개선 주요내용(금융위), 활성화 방안(협회), 모범사례(금융회사) 발표

2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 내용

-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대출시장의 구조적 한계*를 보완하고,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

* 정보 비대칭성과 신용평가 방식의 복잡성, 전문성 문제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금리를 소비자가 수용하는 형태로 운영

-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별로 “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”를 도입하여 운영 중
- 최근에는 소비자가 앱을 통해 대출이자를 한 번에 비교하고 대출신청까지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새롭게 지정

□ 특히,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'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·운영되고 작년말 법제화되는데 이르렀음

- 최근에는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더욱 편리하게 진화되어 왔음

* '18년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 : 약 17.1만건
→ 연간 4천7백억원(추정)의 이자 절감 (은행, 보험, 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사 합산)

□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음

- 우선 금융회사 임·직원에게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,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음
- 또한,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

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,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일 것임

-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
-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겠음

□ 금리인하요구권은,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, 모두가 윈-윈(win-win)하는 제도임

- 오늘 행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해 지기를 기대함

3.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(금융협회 공동)

□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 고도화

- (현행) 2019.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함
- (개선)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·모바일 बैं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(은행권 2019.11월 시행 예정)

□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안내·홍보 강화

-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“대출금리 산정내역서”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
- 소비자가 대출계약시 뿐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 안내 (영업점에서는 홍보 포스터 게시, 리플렛 배포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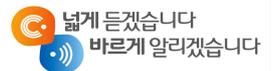
□ 금융회사 직원,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실시

-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안내하는 금융회사 직원,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기교육 등 실시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대출계약 등 체결시
: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- 창구 판매
- 온라인 판매

- 창구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-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확인 서명
- 금융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페이지를 통해 금리
-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전자 서명

금리인하요구권 행사

- 창구 신청
- 온라인 신청

-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 및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-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후 금리인하 신청을 클릭하고, 신용

수용여부 판단

- 판단대상
- 고려사항

-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해 고객이 금리인하를
-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및 개선정도가 금리인하 가능수준에 해

결과 안내

- 기한
- 방법

내용

-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
- 전화,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
- 수용 여부

* 구체적인 안내 및 신청 처리 프로세스는 금융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